

프리미엄택시 정기이용 약정서

(주)하나콜서비스

프리미엄택시 정기이용 약정서

(이하 “갑” 이라 한다)과 ㈜하나콜서비스(이하 “을” 이라 한다) 은 다음과 같이 프리미엄택시(모범·대형·고급택시) 정기 이용에 관한 약정(이하 “약정” 이라 한다)을 체결한다.

제1조 (“을” 의 의무)

- (1) “을” 은 “갑” 의 호출(“갑” 임직원의 호출을 포함)에 따라 배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최우선으로 배차를 하여야 하고,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.
- (2) “을” 은 이 약정에 의해 프리미엄택시를 이용하는 “갑” 의 임직원이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동안 그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.

제2조 (이용요금의 지급)

- (1) “을” 은 “갑” 의 이용내역을 월 단위로 집계하여 이용월 다음달 6일까지 이용요금을 청구한다.
- (2) “갑” 은 “을” 로부터 위 (1)항과 같이 이용요금을 청구 받은뒤 같은달 10일까지 “을” 이 지정한 계좌로 청구금액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급한다.
- (3) “갑” 이 위 (1),(2)항에서 정한 이용요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“을” 에게 연 5%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추가 지급해야한다.
- (4) “을” 은 “갑” 이 “을” 의 인트라넷을 통해 이용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.

제3조 (호출 비용 추가 지급)

- (1) “갑” 은 “을” 에게 제2조의 이용요금 외에 호출비용을 별도로 지급하되, 이용요금과 합산하여 지급한다.
- (2) “을” 은 제2조 제1항에 따른 이용요금 청구시 호출비용을 함께 청구한다.
- (3) 호출 비용은 매 호출 당 1,000원(부가가치세 별도)으로 한다.

제4조 (세금계산서 등 발행)

“을” 은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“갑” 의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영수증을, 호출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.

제5조 (이용요금에 대한 이의)

- (1) 제2조 의 규정에 의해 “을” 이 정산한 내역이 “갑” 이 확인한 이용내역과 상이하거나 기타 부당한 청구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, “갑” 은 확인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“을” 은 확인 후 수정한 내역을 즉시 통보 하여야 한다.
- (2) 이용요금 송금이 지연될 경우 “을” 은 이의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배차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6조 (약정기간)

- (1) 약정기간은 이 약정 체결 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.
- (2) 약정기간 만료 1개월 이전까지 양 당사자 모두 약정종료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 단위로 본 약정과 동일한 조건으로 약정기간이 자동갱신되는 것으로 한다.

제7조 (중도해지)

“갑” 또는 “을” 이 부득이한 사유로 본 약정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경우, 해지 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30일 이전에 통지하여야 한다.

제8조 (배차 및 이용요금의 산정)

- (1) “을” 은 “갑” 의 임직원이 택시를 호출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출 뒤 10분이내에 지정 장소에 도착하여 그 요청자에게 도착을 알리는 전화를 하여야 한다.
- (2) 이용 요금은 승차 요청자의 탑승시부터 미터기를 작동하여 부과,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지정장소에 도착하여 도착을 알리는 전화를 한 후 5분 이상 경과하는 시점까지 승차요청자(또는 탑승자)가 탑승하지 않을 경우에는 5분이 경과한 때부터 미터기를 작동하여 이용요금을 부과한다.

제9조 (비밀유지조항)

“을” 은 “갑” 의 임직원 및 이용고객으로부터 전해들은 회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출시킬 수 없으며 비밀유지가 되지않아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“을” 에게 있다.

제10조 (기타)

- (1) 본 약정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갖는다.
- (2) 본 약정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(3) 본 약정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.

이상의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.

2018 년 03 월 01 일

“갑”

“을”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41길 43-5
신천빌딩 4층

㈜ 하나콜서비스

대표 오주영

